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3358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4. D

5. E

6. F

변론 종결2018. 6. 28.

판결 선고2018. 7. 19.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6,473,272원 및 위 금원 중

가. 262,663,780원에 대하여는 2017. 5. 12.부터 2017. 6.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7. 8. 9.까지는 연 9%의,

나. 315,905,990원에 대하여는 2017. 5. 17.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9%의,

다. 1,287,903,502원에 대하여는 2017. 8. 3.부터 2017. 9.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9%의,

각 그 다음 날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2016. 3.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C와 피고 E 사이의 2016. 3.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3.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F 사이에 체결된 2016. 3. 10.자 매매예약과 2016. 5. 16.자 매매계약을 111,894,375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4. 피고 F은 원고에게 111,894,3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F이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F 사이에 체결된 2016. 3. 10.자 매매예약과 2016. 5. 16.자 매매계약을 211,894,375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 F은 원고에게 211,894,3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하고, 다른 회사의 명칭을 표기할 때에도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 A의 감사이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피고 E은 피고 C의 동생이고, 피고 D는 피고 C와, 피고 F은 피고 B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1) 원고는 2012. 6. 14.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보증보험 한도거래금액을 30억 원, 한도거래기간을 2012. 6. 14.부터 2013. 6. 13.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2011. 1. 1.부터 2030. 12. 31.까지로 하는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28. 한도거래기간을 2013. 6. 27.부터 2014. 6. 26.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2012.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각 갱신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이 피보험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 발행하여 주었다.

2013. 3. 26.	282,095,603원	~2013. 10. 30.	
제1보험			
2016. 1. 5.	315,905,990원	~2016. 8. 29.	최종 갱신
2013. 10. 21.	278,887,680원	~2014. 1. 29.	
제2보험			
2016. 2. 1.	309,153,990원	~2016. 8. 29.	최종 갱신
2013. 10. 21.	229,900,270원	~2014. 1. 29.	
제3보험			
2016. 2. 1.	254,850,210원	~2016. 8. 29.	최종 갱신
2013. 10. 28.	235,292,380원	~2013. 11. 30.	
제4보험			
2016. 2. 1.	262,663,780원	~2016. 8. 29.	최종 갱신
2014. 4. 10.	175,976,602원	~2014. 6. 30.	
제5보험			
2016. 2. 1.	175,976,602원	~2016. 6. 30.	최종 갱신
2014. 5. 21.	228,940,620원	~2014. 7. 29.	

2013. 3. 26.	282,095,603원	~2013. 10. 30.	
제6보험			
2016. 2. 1.	247,583,650원	~2016. 8. 29.	최종 갱신
2014. 5. 21.	277,723,550원	~2014. 7. 29.	
제7보험			
2016. 2. 1.	300,339,050원	~2016. 8. 29.	최종 갱신

다. 구상채권의 발생 등

- (1) 피고 A은 위 각 보험증권을 담보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6. 10.경 회생신청을 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 (2)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017. 5. 11.	선급금 반환채무	262,663,780원	제4보험증권
2017. 5. 16.	선급금 반환채무	315,905,990원	제1보험증권
선급금 반환채무	309,153,990원	제2보험증권	
선급금 반환채무	254,850,210원	제3보험증권	
2017. 8. 2.	계약보증금 지급채무	175,976,602원	제5보험증권
선급금 반환채무	247,583,650원	제6보험증권	
선급금 반환채무	300,339,050원	제7보험증권	
합계		1,866,473,272원	

- (3) 각 이행보증보험 약정 당시 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3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12%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9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피고 C는 2016. 3. 9. D와 E에게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각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16. 3. 10. 피고 F에게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F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피고 F은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6.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6.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D, E의 각 근저당권은 2016. 5. 16.자 해지를 원인으로, 종전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은 2016. 5. 17.자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으며,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억 8,56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졌다.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866,473,272원 및 위 금원 중 262,663,780원에 대하여는 구상금 지급 다음 날인 2017. 5. 12.부터 30일째 되는 2017. 6. 10.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2017. 8. 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9%의, 315,905,990원에 대하여는 구상금 지급 다음 날인 2017. 5. 17.부터 30일째 되는 2017. 6. 15.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2017. 8. 14.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9%의, 1,287,903,502원에 대하여는 구상금 지급 다음 날인 2017. 8. 3.부터 30일째 되는 2017. 9. 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2017. 10. 3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9%의, 각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7. 11. 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E, F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로서 대위변제일인 2017. 5. 11., 2017. 5. 16. 및 2017. 8. 2.에 각각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각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C는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3개월 뒤,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는 1개월 뒤인 2016. 6. 10. 법원회생신청을 하여 각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원고가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법원의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5,238,000원,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2,454,925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억 5,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1,866,473,272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 C가 피고 D, E, F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D, E, F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D, E, F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D, E은 피고 C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 F은 피고 B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피고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대로 3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피고 F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피고 C는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 E, F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F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피고 C의 이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D, E,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D, E,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 A이 회생신청을 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 D, F은 피고 B, C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 E은 피고 C의 동생인 점, 피고 B, C는 피고 D, F의 차용금을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점, 피고 F은 피고 C와는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고, 피고 E도 자신이 피고 C에게 빌려준 금액은 채권최고액인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 D, E, F은 각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뒤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담보를 제공받은 점, 피고 C는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E, F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535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앞서 본 법리는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6. 5. 17. 신한은행, 우리은행, 피고 D 및

피고 E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238,105,625원(= 신한은행 95,650,700원 + 우리은행 42,454,925원 + 피고 D 5,000만 원, + 피고 E 5,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억 5,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F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111,894,375원(=3억 5,000만 원 - 238,105,6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F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1,894,3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옥

판사문종철

판사박태수

별지